

New Turkish Chemical Regulation ;

+

“ Inventory and Control of Chemicals ”



# I. 배경

- ✓ **Global Trend** :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 보호
- ✓ **EU REACH** : 유사한 화학물질규제의 지역적, 제도적 확산
- ✓ **전략적 고려** : 터키의 2013년 EU가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EU REACH에 근접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



“ 새로운 규제를 준수한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 ”

“ 수출기업의 현지시장유지를 위한 규제대응 노력이 필요 ”

# II. 新화학물질관리제도

- ✓ 주무부처 :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(MoEF)
- ✓ 관계법령 : Regulation on the Inventory and Control of Chemicals  
(26<sup>th</sup>Dec.2008 제정 / 10<sup>th</sup>Nov.2009, 23<sup>th</sup>May.2010 개정)
- ✓ 주요내용
  - 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지침
  - 화학물질 관리 및 인벤토리 지침
  - 위험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분류,표지 및 포장 지침.
- ✓ 규제면제
  - 가공, 처리되지 않는 세관관리하의 운송물질
  - 군사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
  - 연간 1톤 미만의 유통 물질

# III. Inventory Creation

- ✓ **등록대상** : 3년 평균 연간 1톤 이상 터키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내 화학물질.
- ✓ **등록면제**
  - 천연물질  
(미네랄, 광석, 정광, 천연가스, 액화석유가스, 원유, 석탄, 유연탄 등)
  - 물질정보(유해성, 위해성 등)가 충분한 천연화학물질  
(수소, 산소, 질소, 헬륨 등)
  - **고분자(Polymers)\***
  - 법령 부록1 Part3에 기재된 75개의 화학물질

- \* 2009년 11월 10일, 1차 개정을 통해 고분자를 등록면제로 규정
- \* 고분자내 단량체 및 융합축매(Reactives), w/w 조건없이 등록면제
- \* 단, 고분자 합성 이후 첨가제(Additives), 1톤 이상시 등록 대상

# III. Inventory Creation

## ✓ 등록주체

- 대상물질의 터키내 제조자 내지 수입자
- 대표제조자(대표수입자)를 통한 공동등록 가능
- 터키역내 대리인
  - : 터키 역내 법인으로서 역외 수출자의 등록신고 대리
  - EU REACH의 유일대리인(Only Representative)과 유사한 개념으로 2010년 5월 23일 2차 개정시 추가
- 동일공급망내 등록 공유\*

\* EU REACH와 유사하게 공급망내 누군가가 등록을 하면 대상물질의 동일 공급망내에서 등록번호를 공유할 수 있다. 단, 대상물질의 터키내 수입자정보, 톤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# III. Inventory Creation

## ✓ 등록기한

- 2010년 1월 1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 물질



“ 2011년 3월 31일까지 ”

- 2010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 물질



제조 또는 수입일로부터 15개월 이내

# III. Inventory Creation

## ✓ 등록정보

1. 톤수범위 : 1 ~ 1,000 톤

- 화학물질명, EC번호, CAS번호
- 수입 또는 제조 수량
- 터키 CLP에 따른 분류정보
- 물질 용도, 수입자 정보(OR을 통한 등록시)

“터키 환경산림부(MoEF)는 등록물질의 독성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”

# III. Inventory Creation

## ✓ 등록정보

### 2. 톤수범위 : 1,000 톤 이상

- 화학물질명, EC번호, CAS번호
- 수입 또는 제조 수량
- 터키 CLP에 따른 분류정보
- 물질 용도, 수입자정보(OR을 통한 등록시)
- 물리화학적 특성
- 환경매체에서 화학물질의 변화와 반응 자료
- 환경독성자료
- 급성 및 아급성 자료
- 발암성, 돌연변이성, 생식독성 자료.
- 기타 위해성평가 관련 자료

“(법령 7조4항)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독성 및 생태독성 자료를 환경산림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기존 정보 획득에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어야 한다. 다만 기존에 없던 자료를 위하여 추가로 동물실험을 수행할 의무는 없다.”

# III. Inventory Creation

## ✓ 등록정보

법령 부속서II에 명시된 요구 유해성 정보( > 1,000 톤)

| 물리화학적 특성   | 환경매체에서 물질의 거동   | 환경독성   | 독성   |
|--|---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녹는점</li><li>• 끓는점</li><li>• 비중</li><li>• 압력</li><li>• 분배계수</li><li>• 수용성</li><li>• 인화점</li><li>• 자연발화</li><li>• 자연발화 온도</li><li>• 폭발성</li><li>• 산화성</li><li>• 기타 관련 자료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광분해성</li><li>• 물에서의 분산 안정성</li><li>• 토양에서의 분산 안정성</li><li>• 환경감리자료</li><li>• 환경거동자료</li><li>• 생분해성</li><li>• 생물농축성</li><li>• 기타 관련 자료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어류에 대한 독성</li><li>• 물벼룩 및 수중 무척추동물에 대한 독성</li><li>• 조류에 대한 독성</li><li>• 박테리아에 대한 독성</li><li>• 육생동물에 대한 독성</li><li>• 토양생물에 대한 독성</li><li>• 기타 관련 정보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경구독성</li><li>• 급성 흡입 독성</li><li>• 급성 경피 독성</li><li>• 기타 급성 독성 자료</li><li>• 피부 자극</li><li>• 안구 자극</li><li>• 감각효과</li><li>• 반복투여독성</li><li>• 체외유전독성</li><li>• 발암작용</li><li>• 생식독성</li><li>• 인체 노출에 관한 경험</li></ul> |

# III. Inventory Creation

## ✓ PRIORITY LIST

터키 환경산림부(MoEF)는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, 인체와 환경에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들을 대상으로, '우선관리물질목록(PRIORITY LIST)'으로 지정, 공표할 수 있다.



### PRIORITY LIST 선정 기준

-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부적합 자료
- 인체 및 환경 노출에 대한 화학물질 자료
- 터키가 참여한 국제기구, 국제협회의 화학물질 연구자료
-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률 및 규제.

# III. Inventory Creation

## ✓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(CBI)

화학물질정보에 대한 기술적, 영업적 보안이 필요하다면, 등록주체인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환경산림부에 영업비밀유지(CBI)를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.



### CBI 적용 예외

- 화학물질명
- 물리화학적 특성 및 환경매체에 대한 거동 관련 자료
- 발암성, 돌연변이, 생식독성 등 독성 및 생태독성 관련 자료
- 물질결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정보
- 동물실험정보

환경산림부는 CBI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, 승인시 문서로서 그 사실을 통보한다.

# IV. 당사 제공 서비스



- ✓ 터키 신화학물질규제 대응 관련 자문 및 교육
- ✓ 터키 신화학물질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
- ✓ 터키내 OR을 통한 등록 및 신고 대행
- ✓ 등록을 위한 화학물질 정보 수집, 제공
- ✓ 등록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
- ✓ 주요국 화학물질규제 대응을 아우르는  
종합 컨설팅 일원화 서비스